

노보세븐[®] 알티주 보험급여*

[332] 지혈제

구 분	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
<p>Eptacog alfa 주사제 (품명 : 노보세븐[®] 알티주)</p>	<p>1. 출혈, 수술, 침습적 시술 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아 래-</p> <p>가.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 환자 및 후천적 환자</p> <p>1) 투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BU (Bethesda unit) 이상인 경우 <p>2) 투여용량</p> <p>가)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(용법 · 용량)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 나) 외래환자의 경우 출혈이 있어 내원 시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2회분 처방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기 이상 투여 시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출혈소견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함. <p>나.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</p> <p>다.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당단백질(GP) IIb-IIIa, 조직적합성항원(HLA)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, 현재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(Glanzmann's thrombasthenia) 환자</p>
	<p>2.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아 래-</p> <p>가. 투여대상: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다 음-</p> <p>1) 중증 출혈(중추신경계 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 또는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관절병증)이 있는 경우</p> <p>2) 혈액응고 7인자 활성도(Factor VII:c)가 2% 미만인 경우</p> <p>나. 투여 용법·용량: 30µg/kg 이내, 주 3회 투여 시</p>

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1호, 2019년 9월1일 시행



노보 노디스크 제약(주)
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, 한국광고문화회관 16층 (우)05510
Tel : (02) 2188-8900 Fax : (02) 2188-8980

Targeted bleeding control

NovoSeven[®] RT
Recombinant Factor VIIa



K119NS00012